- 경로당 운영관련 사항
- '학대노인 지킴이센터'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 - *신규 설치 경로당도 '학대노인 지킴이센터'로 추가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
- 경로당 냉·난방비 등 보조금 정산 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
-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므로 경로당의 소유자(아파트 주민회, 마을주민, 노인회 등)가 누구든지 불구하고,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(냉·난방비, 운영비 등 지원)임을 명확히 할 필요
- 필요시 지역의 대한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되, 지역노인(대한노인회 미가입자 등)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·점검 강화
-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인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, 경로당 정상운영 여부 등 보조금 집행점검을 강화하고, 경로당 보조금 사적이용 여부 등 발견 시 보조금 지급 중단
-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- * 대한노인회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,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
- * 경로당 운영비 운영사항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냉·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읍·면·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
- 경로당 이용 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·난방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
-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
-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, 부식비 등을 지급
 - *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, 안전하게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(급수대, 싱크대, 배연시설 등)를 갖추고, 화재·급식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
-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,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
-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 제공
 - *지방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 "기관명" 사용
- * 사업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통해 간접지원 가능